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모경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28

발의연월일: 2024. 8. 7.

발 의 자:배준영·모경종·허종식

김교흥 • 이광희 • 채현일

복기왕 • 주철현 • 윤상현

위성곤・김 윤・조은희

문금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군·구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 지방자치단체라 정의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구는 신청사 건립 및 정보시스템 개편, 표지판 정비 등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아 그 비용 을 모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함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됨.

또한,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 위기 상황으로 지방자 치단체 구조 개편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인천과 유 사한 형태의 개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군·구 중에서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설치된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서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 17호의2·제19호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7호의2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7의2. "지방자치단체의 신설"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9. "신설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다만,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장제3절제2관의 제목 중 "통합"을 "통합·신설"로 한다.

제48조 중 "통합으로"를 "통합 및 신설(이하 "통합등"이라 한다)로"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통합으로"를 "통합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신설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합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신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통합에"를 "통합등에"로, "범위에서 통합"을 "범위에서 통합"을 "범위에서 통합등의"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를 "통합지방자치단체등에"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에"를 "통합등에"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를 "통합지방자치단체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합 지방자치단체등의"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통합지방자치단체에"를 각각 "통합지방자치단체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통합지방자치단체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합지방자치단체를"을 "통합지방자치단체등을"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통합지방자치단체에"를 "통합지방자치단체등에"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를 각각 "통합지방자치단체등이"로, "통합지방 자치단체의"를 각각 "통합지방자치단체등의"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를 "통합지방자치단체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통합 지방자치단체가"를 "통합지방 자치단체등이"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를 "통합지방자치단체등에"로 한다.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지방자치단체 가"를 "통합지방자치단체등은 통합지방자치단체등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1. ~ 17. (생 략) | 1. ~ 17.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u>17의2. "지방자치단체의 신설"</u> |
| | 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 |
| | 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 |
| | 단체 중에서 1개 이상의 지방 |
| | 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 |
| | 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 |
| | 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설 |
| | 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 |
| | 1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 <u>한다.</u> |
| 18. (생 략) | 18.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19. "신설 지방자치단체"란 |
|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 |
| | 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
| | 중에서 1개 이상의 지방자치 |
| | 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
| |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
| |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 |
| | 다. 다만, 제18호에 해당하는 |
| | 경우는 제외한다. |

제2관 <u>통합</u>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제48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지방 자치단체의 <u>통합으로</u>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 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 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 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 서는 아니 된다.

제49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u>통</u>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u>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u>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 제2관 <u>통합・신설</u> 지방자치단체 |
|-------------------------|
| 에 대한 특례 |
| 제48조(불이익배제의 원칙) |
| <u>통합 및 신설(이</u> |
| 하 "통합등"이라 한다)으로 |
| |
| |
| |
| |
| |
| 제49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 |
| 우보장) ① |
| <u>통합등으로</u> |
| |
| |
| |
| <u>.</u> |
|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신 |
| 설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합지 |
| 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는 폐 |
| 지되는 지방자치단체(신설 지 |
| 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
| 을 관할하는 종전의 지방자치 |
|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
| |

- 제50조(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 지례)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u>통합에</u> 직접 사용된 비용을 예산의 <u>범위에서 통합</u> 추진 과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u>통합 지방자치단체에</u> 지원할 수있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

 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한정한다)의 일부를 통합 지방

 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③ <u>통합 지방자치단체의</u> 최초 의 예산은 종전의 지방자치단 체가 각각 편성·의결하여 성 립한 예산을 회계별·예산항목 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 제51조(<u>통합 지방자치단체에</u> 대 전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통합 지방자치단체에</u>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있다.

| 제50조(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 | - |
|---------------------------|---|
| 례) ① | - |
| <u>통합등에</u> | - |
| <u>범위에서 통합등의</u> | - |
| | - |
| <u>통합지방자치단체등에</u> | - |
| ·. | |
| ② <u>통</u> | - |
| 합등에 | - |
| | - |
| 통합지빙 | - |
| <u> 자치단체등에</u> | - |
| | |
| ③ 통합지방자치단체등의 | - |
| | - |
| | - |
| | - |
| | |
| 제51조(<u>통합지방자치단체등에</u> 대 | |
| 한 특별 지원) ① | - |
| | - |
| | - |
| 통합지방자치단체등에 | - |
| | - |
| | - |
| | |
| ·. |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지구·지역 등을 지정할 때 통합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구역의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u>통합 지방자치</u>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목 특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보다 통합 지방자치단

| ② |
|------------------------|
| |
| |
| |
| <u>통</u> |
| 합지방자치단체등 |
| |
| |
| |
| ③ |
| |
| <u>통합지방자치단</u> |
| 체등을 |
| |
| |
| 제52조(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
| 특례) ① <u>통합지방자치단체등</u> |
| <u>oll</u> |
| |
| 통합지방자치단체등이 |
| |
| |
| |
| |
| |
| <u>통합지방자치</u> |

체의 재정부족액이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통합 지방자치단체가 1월 1일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를 말한다)부터 4년 동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매년 보정할수 있다.

② (생략)

제5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4조(예산에 관한 특례) <u>통합</u>

| 단체등의 |
|----------------------------|
| |
| |
| 통합지방자치단 |
| 체등이 |
| |
| 통합지방자치단체등의 |
| |
| <u>.</u> |
| · ② (현행과 같음) |
| 제53조(통합지방자치단체등에 대 |
| 한 재정 지원) |
| |
| |
| 통합지방자치단체등이 |
| <u> 6 합시 6시시 단세 6 의</u> |
| |
| |
| |
| |
| |
| |
| |
| 통합지방자치 |
| <u>단체등에</u> |
| |
| 제54조(예산에 관한 특례) <u>통합지</u> |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 의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u>방자치단체등은</u> | <u>- 통합지방자치</u> |
|----------------|-----------------|
| 단체등이 | |
| | |
| | |
| | |
| | |